■ 신청서류

- 공고일('25.03.27)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 123456-1234567)

■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제출)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이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인감도장 및 위임장 (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②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기본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발급처	부수
매입임대공급 신청서	•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 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신청자 작성	1통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외국인배우자가 동일 주소에 거주 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등재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행정 복지 센터	1통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 (공급신청자 포함) 	행정 복지 센터	1통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기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행정 복지 센터	1통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반드시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 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 등록번호, 세대구성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행정 복지 센터	1통
임신진단서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자산기준 산정시 가구원수에서 태 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1통
동일주소 외국인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국내거소신고증	 가구원수별 주택유형 및 소득기준 산정 시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존비속을 포함할 경우 * 단, 외국인 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제출 생략 	출입국 관리 사무소	1통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수급자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주거지원시급가구 및 저소득고령자	 주거·교육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아래는 주거지원 시급가구 신청자의 자격 입증서류임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 가능 ② 전용 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현재 거주지 주소가 확인될 수 있는 사진, 부엌 및 화장실 사진 각 1부 	

■ '장애인(소득 70% 및 100% 이하자), 소득 50% 이하자' 추가 자격 입증서류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공통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나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주의)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란에 모두 서명 필요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자산 보유사실 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신청자 작성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 배우자가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의 장애인 등록증도 신청자 서류로 인정	행정복지센터

■ 배점항목표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제출

구 분	제출서류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입증 서류(세대원 포함)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가입은행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발급 가능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순위확인서발급 - [기타임대주택용]맞춤형임대주택 순위확인서)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2025.03.27 ※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2025980040 종전 청약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가입을 완료하여야 청약 신청 가능하며, 전환 시 종전 청약통장과 전환 후 납입횟수를 모두 합산하여 납입횟수로 인정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자> • 국토부 훈령「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별지 5]」에 따른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소득 대비 임차료 30% 이상인 자> • 주택임대차 계약서 1부(확정일자가 날인된 계약서만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서도 접수 가능 ※ 주거지원 시급가구 신청자로 기 제출한 경우 제출 불요